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1.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건 명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0. 1. 22. ~ 2020. 2. 5.(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4층)에 직접 방문, 우편발송 또는 팩스 (02-6915-4018), 전자우편(caca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변상균(Tel 02-2004-73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 2020. 1. 22. ~ 2020. 2. 5.)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1	(주)서릉** (20*-8*-1199*-0) 대표자명: 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된 처분의 제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 당사자 명칭: (주)서릉**(대표자명: 윤**) ○ 당사자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23길 **, *층(전농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감원방지기간 내에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장에 기지급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회수코자 함. · 감원방지기간: 2016.7.1. ~ 2017.3.31. ·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근로자: 송** ○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내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51,200원 회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상기 공고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제출기관(주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 	이사불명, 폐문부재